

안전하고 성평등한 대학 캠퍼스 만들기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대학 캠퍼스 만들기

： (, , , , ,)

1월	모두가 존중받는 새터를 준비하다!	04
2월	음주 문화를 점검하다	07
3월	안전한 동아리 만들기	09
4월	데이트의 이면 — 데이트 폭력	12
5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15
6월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18
7월	해외로 — 안전한 여행을 위한 Q & A	21
8월	불법촬영	24
9월	교수-학생 간 권력형 성폭력	26
10월	대학 익명게시판	29
11월	성폭력 2차 피해	31
12월	연말파티와 모임 — 합의된 성관계와 준강간/준강제추행	33

1月

모두가 존중받는

새터¹를 준비하다!

#합격발표 #새터준비 #첫만남 #새내기OT
#신입생 #동기 #선배

1 '새내기 새로배움터'의 줄임말

_____ 신입생들이 가장 기대하고 또 궁금해하고 있을 ‘새내기 새로 배움터(아래 새터)’!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또한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1월입니다. 모두에게 보람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재학생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데요. 특히 성폭력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하면 보다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1. 새터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

새터에서의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은 신입생들이 ‘침묵하지 않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새터에서 우리는 앞으로 대학 공동체 내에서 함께할 사람들과 처음 만나 n박 n일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친밀한 신뢰 관계와 일정한 위계질서가 요구되는 대학 공동체의 새내기로서 행사 도중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신의 착각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대응에 미숙하여 그대로 침묵하기** 쉽습니다. 그런 만큼 새터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은 더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구분하기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은 엄연히 다른 교육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교육의 목적에 있습니다. 성교육은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성폭력 예방 교육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성폭력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매년 성폭력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① 모든 학생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

소규모의 여러 그룹을 만들어 토론을 진행하는 등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는 활동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연극이나 직접 하는 토론은, 단순히 몇 명을 지목해서 진행하는 발표 형식보다 **교육을 듣는 학생이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육 내용을 단순히 전달받을 때와는 달리,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일과 교육 내용을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과 ‘데이트 폭력’, ‘단체 카톡방에서의 성폭력 범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신을 포함한 주변에서 관련 일을 겪었던 사례를 찾아본다면, 성희롱과 성폭력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론에 그쳤던 교육을 ‘자신의 일’로 인식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다른 예로 문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일화를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의 교육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처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당사자성을 부여한다면, 성폭력 예방 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을 것입니다.

②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보기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연결하여 **적용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이론을 넘어서, 실제 사건 발생 시, 그에 따른 대처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③ 듣는 대상을 고려한 교육

듣는 대상의 연령대, 최근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즉, 대학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의 최근 통계 수치와 가능한 범죄 형태를 예시로 제시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교육 및 2차 피해 방지

가해행위자가 되지 않는 방법, 혹은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사건 발생 시 **신고 방법**, 혹은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① 신고 방법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신고창구)**과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신고 방법**을, 언제든 볼 수 있는 팸플릿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교육 중에 언급**하여 피해 발생 시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학내 : 학내 상담기구, 학내 (양)성평등상담소, 학생처, 학과 등
- 학외 : 관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긴급출동의 경우 112, 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교육부 및 정부부처 온라인 민원 및 신고센터

② 2차 피해의 심각성 부각

행위의 폭력성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유 없이 그랬잖어?”, “꽃뱀이네”, “그러게 누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래?” 등의 표현, 피해 사실을 필요 이상으로 알고자 하는 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폭력, 절도, 살인과 같은 범죄의 경우, 가해행위자의 가해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달리, **성폭력 범죄에서는 유독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등의 시선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부각하고, 가해행위자의 가해를 정당화하는 등의 언행이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새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진지하게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고민하고, 범죄 상황과 2차 가해까지 예방하고자 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유쾌하고 즐거운 새내기 새로 배움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안전하고 유쾌한 새내기 새로 배움터 되시길 바랍니다!

2月

음주 문화를 점검하다

#입학식 #졸업식 #수강신청 #새터
#오리엔테이션 #신입생환영회 #신환회 #드디어개강



타인을 배려하는 음주 에티켓 2월의 대학가에는 대학에 갓 합격한 신입생들의 설렘과 긴장감이 공존합니다. 각 과에서는 개강 전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모임을 열어 서로 안면을 트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에 대학가 근처 술집에 가면 테이블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자리를 가지는 신입생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술자리에서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에티켓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① 음주·술 게임 강권 NO

술 게임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데 쓰인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지나치게 음주를 강권하는 것은 일부 학우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음주를 하지 않거나, 질병이 있어 술을 마실 수 없거나, 특정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단이 반드시 음주일 필요는 없으며, 술을 권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사를 반드시 묻고 절대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② 소수자 비하 표현 사용 NO

‘게이샷’, ‘레즈샷’, ‘병신샷’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게이샷’과 ‘레즈샷’은 ‘동성끼리 팔을 얹어 술을 마시는 것은 성 소수자가 할 법한 일이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는 이의 동작이나 태도를 놀리기 위해 사용되면서, 일상 속에 있을 성 소수자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배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병신샷’은 술 게임에서 실수를 했을 때 벌칙으로 술을 권하며 쓰는 표현으로 장애인의 신체 활동을 비하하는 표현에서 시작된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세 단어를 포함하여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은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타인을 배려하는 건강한 음주 YES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타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음주가 성숙한 음주문화일 것입니다. 지나친 과음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술자리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프로불편러’로 보일까 걱정되나요? 하지만 기존의 문화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해왔다면 즐거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익숙함에 마비되지 않고 일상의 문화를 돌아보며 문제의식을 지속해서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용기는 우리가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어 줄 테니까요.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아차샷’ (술게임 ‘실수’에서 비롯한 ‘벌주’로서의 성격을 담은 용어 - 비영리단체 ‘애칭정하기’(장애인 지칭 표현 바로잡기) 캠페인에서 발췌)
- ‘벌주샷’, ‘실수샷’, ‘친구샷’ 등등

대학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한 대학에서는 신입생 환영회와 새터 때마다 스티커 혹은 팔찌를 준비해둔다고 해요. ‘술을 마셔도 괜찮은 사람,’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오늘은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 등 색깔이나 형태 등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스티커 혹은 팔찌를 마련해두어서, 보이는 곳에 붙이거나 손목에 찢 수 있어요.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을 유연하게 피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개강 #동아리 #소모임 #개강총회 #동아리어디가지 #봄학기

● 안전한 동아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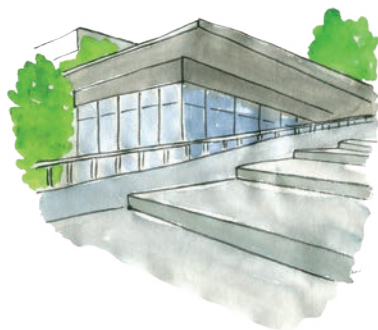
봄학기가 시작되고 따뜻해진 날씨와 개강 파티가 한창일 때, 학교 한쪽에서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신입 부원을 모집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아리 박람회에서 왁자지껄하게 자신의 동아리를 뽐내거나 여러 이벤트를 준비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학생들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할지 둘러보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학내 동아리의 운영방식 //

동아리의 사전적 정의는 ‘공동의 관심사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 규모는 천차만별인데, 규모가 작을수록 구성원들 사이에 연대나 인맥이 강하게 형성됩니다. 담당 선생님과 함께 학교의 규율에 맞추어 진행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대학교 동아리는 대표자 및 회장단을 중심으로 소속 학생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아리의 경우에는 ‘동아리연합회’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이 기획됩니다. 하지만 한 **동아리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 동아리의 자체적인 해결 //

2017년 11월, 국내 한 대학교의 동아리에서 동아리 부원 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행위자는 검찰에 의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사건 발생 이후 동아리 측은 단체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내부 공론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² **소규모의 집단이라는 점,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점, 친목을 바탕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폐쇄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동아리**에서는, 이러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동아리의 규모가 작을수록, 비공식적인 조직일수록, 외부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가해행위자에 대한 자체적인 제재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학교 내의 기관을 통해 가해행위자에게 징계 및 제재가 내려졌다고 해도, **동아리의 내부적인 해결 방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후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2 중대신문, “‘남녀 간 불미스러운 일’로 성폭행 일축한 동아리”, 2018.01.31, <http://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1427>

// 관련 규율 및 규칙의 부재와 어려움 //

동아리 안에서는 성폭력 발생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율 및 프로토콜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선, 동아리 회장단 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다”, “이미 규율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더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굳이 필요할까 싶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동아리의 규율집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가해행위자에 대한 제명과 관련한 규율만 있을 뿐,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시 가해행위자와 피해자의 이후 활동과 분리에 관한 조치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한 단일한 조치가 규율의 부재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건 발생 이전 동아리 내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해행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율의 확인 및 수립은 필요할 것입니다.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사건이 발생했다면,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임원단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사안이고, 사건과 관계된 모든 학생이 이러한 진상조사에 동의하며,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하되 비밀유지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꾸릴 역량이 있다면 사건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회장단만으로도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지만, 진상 관계 파악이 어렵다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부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원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학내 인권센터 혹은 (양)성평등상담소와 같은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인가요? //

동아리와 같은 조직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행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구성원들이 사건을 진지하게 인지하고 평등한 동아리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을 하나의 가십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피해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판이나 해당 사건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경솔한 태도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부원들 모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비밀 유지가 보장되는, 부원들이 안심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술이나 분위기에 취해 자칫하면 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술자리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에서의 동아리는 학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이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활력소와 같은 공간이기에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동아리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月

데이트의 이면 — 데이트 폭력

#과애티 #동아리애티 #CC #데이트 #벚꽃놀이 #데이트 #봄 #낭만 #대학커플

_____ 조금은 어색한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면 학우들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커플, 특히 CC(대학 내 커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피어나는 벚꽃과 함께 시작되는 연애는 풋풋하며 낭만적이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면 또한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추행,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을 포함한 폭력행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데이트 폭력이 최근에서야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이유는 과거에 피해자와 가해행위자, 그리고 사회 전반이 이를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해왔다는 점 때문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주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보복성 음란물) 유포 협박의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행위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전략 중의 하나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가해행위자에게 종속되게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는 가스라이팅과 슬릿 세이밍이 있습니다.

1. 가스라이팅 (Gaslighting, Gaslight Effect)

가스라이팅이란?

여러 폭력 형태 중에서도 특히 의식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폭력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으로써 상대방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낮추고,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 선후배 내 모든 관계에 통용되며, 일방적으로 의심받는 심리적 가학 행위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발생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스라이팅'이?

** 다음 내용은 글쓰기가 임의로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이며,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지 않고 불신하며 상대방의 요구나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행동, 혹은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발화나 행동들은 가스라이팅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1) “나 아니면 누가 너랑 만나주겠어?”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는 발화에 해당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가스라이팅의 대상이 되기 쉽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상대방의 행동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상대가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피해를 알아채고 그것을 지적했을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며, 가스라이팅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상대의 '예민함'에 자신이 행한 가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위 내용이 본인의 혹은 주변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참고, 더 잘해서' 관계를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며,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들이 지속적이고,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제3자가 개입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피해자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제3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불리 비난하거나 무조건적인 동정을 표하지 않고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슬럿 세이밍(Slut-shaming)

슬럿 세이밍, 들어보셨나요?

슬럿 세이밍(슬럿 셰이밍)은 타인의 외모나 옷차림 등 성적 코드와 연결시켜 이를 빌미로 낙인을 찍어 비난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차별을 슬럿 세이밍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평판을 더럽히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상 지속하는 대학 시절 동안 여성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기도 합니다. 슬럿 세이밍을 하는 가해 행위자들도 잘못된 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며 무분별하게 발생합니다.

3.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가스라이팅과 슬럿 세이밍은 상대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한 권력 관계 속에서 피해자 개인에게 문제를 타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나 슬럿 세이밍은 언어적 폭력이며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더라도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상황에서는 '기분 나쁘다'고 말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이 있는 연인 관계가 더욱 행복한 대학 생활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요?



5月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축제 #대동제 #중간고사 #주점 #놀러와 #연예인 #아이돌 #무대 #행사

_____ 5월은 축제의 달입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한 해의 첫 축제가 시작되고 학우들은 축제를 준비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축제 기간에는 연예인들이 학교에 와 무대를 선보이고 학과 혹은 동아리에서 준비한 주점들이 교내에 가득 찹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축제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즐거운 축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1. 주점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지는 주점이 있다?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던 웹툰 <내 ID는 강남미인>은 대학 주점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속한 학생회의 선배 및 동기 남학생들이 소위 '예쁜 여학우'들을 선발해 서빙팀에 배정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여학생들과 그 외의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품평과 성적 대상화의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복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웹툰에서는 지속되는 외모 품평에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반격하며 마무리되었지만, 씁쓸함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시원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여학우와 남학우가 자리를 합쳐 서로 어울리는 '합석'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합석의 가능성'은 대학 주점을 홍보할 때도 사용하는 광고 문구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합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대방에 대한 외모품평과 대상화 그리고 거절되었을 때 발생하기도 하는 폭력을 감안한다면 '합석'으로 빚어지는 여러 상황이 젠더에 기반한 불평등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점 홍보 문구에서도 성적 대상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몇년 전 한 대학의 주점에서는 사람의 성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제목을 노골적으로 주점 메뉴판에 기재해 자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표현들은 관행처럼 많은 학내 주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진정한 낭만으로 남기 위해

대학 축제, 특히 주점 홍보 문구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적 대상화를 비판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가 주점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사실 이는 너무 당연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적 대상화와 성희롱이 만연한 주점은 더 이상 대학 축제의 꽃, 혹은 낭만으로 남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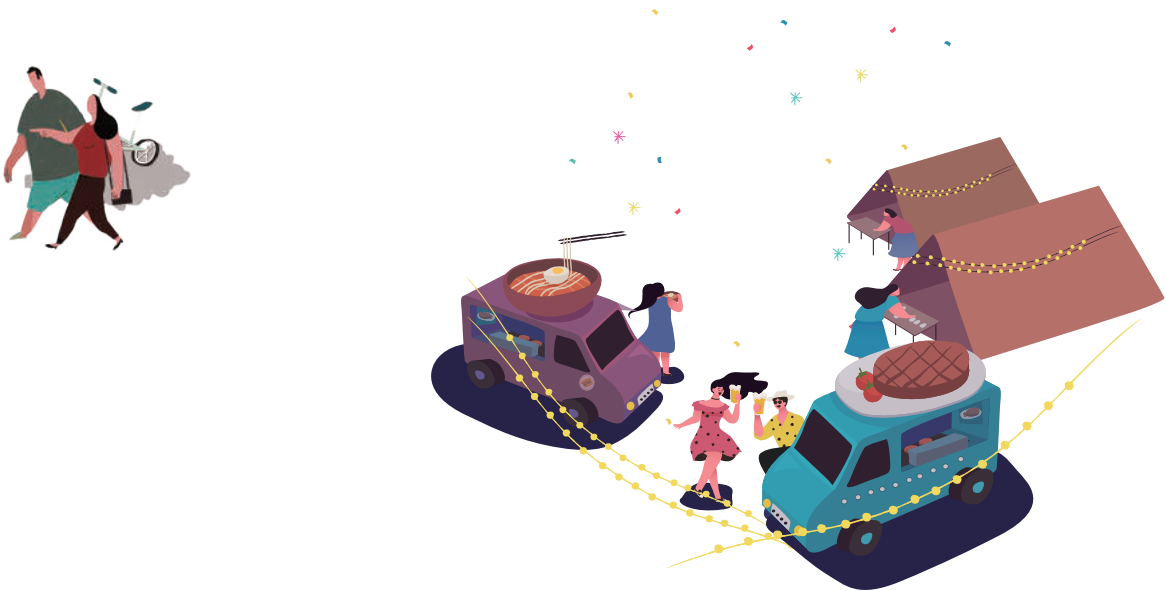




2.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축제를 기획하는 학생들과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 단순한 ‘재미’ 혹은 ‘유희’를 위해 행동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진 않을까 고려하며 축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에는 타협이 없어야 하기에, ‘적당한 선의 인권침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획 측이 민감하게 차별적 요소를 검수하고 축제를 기획해야 하며, 행사 도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들 또한 미리 합의하여 마련한 자치규약 등을 통해 현명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 측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의 제보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대학 축제, 주점 문화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 변화가 분명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에 가까워지는 길이 되어 줄 것입니다.



6월 귀기울이기
소수자의 목소리에



#기말고사

#종강

#초여름

#퀴어퍼레이드

#서울퀴어문화축제

#젠더

#서울퀴어퍼레이드



매년 6월은 평등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달이죠! 2000년에 시작한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비성소수자인 ‘이성애자 시스젠더’³가 다수인 사회에서 함께 모여 자신의 존재를 다시 써 내려가고자 열려 왔는데요, 다름을 틀림의 지위로 배격하는 사회 속에서,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는 쉽게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죠. 그에 당당히 맞서는 성 소수자와 혐오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퀴어퍼레이드가 뭔지, 성 소수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퀴어(Queer ; 성 소수자)란?

‘퀴어’는 본래 ‘이상한’, ‘색다른’ 등의 뜻으로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의도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다 1980년대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전개되며, 본래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의미는 사라져 성 소수자를 포괄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어요.

성 소수자

‘성 소수자’는 흔히 생각하는 동성애자뿐 아니라 훨씬 많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아래 표는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에 따라 큰 범주로 정리했지만, 용어들을 자세히 아는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시스젠더, 이성애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 소수자들이 넓은 스펙트럼 위에서 있음을 인지하고 편견에서 탈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성적 지향(취향/기호)에 따라서

동성애자 :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 끌림을 느끼는 사람(흔히 레즈비언, 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범성애자 :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성적 지향. 사람을 여성 혹은 남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정체성 또한 신경 쓰지 않으며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성애자 : 누구에게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성 생활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아예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이루어지는

성적 행동인 순결이나 금욕과는 구분됩니다. 또한, 일부 무성애자는 성욕이나 성애가 결여되어 있음에도 ‘동반자의 만족’이나 ‘자녀를 갖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로 성행위를 할 수 있어요.

양성애자 : 두 개 이상의 젠더에 끌리는 사람을 뜻해요.

B. 성 정체성에 따라서

안드로진 : 중성적, 양성적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

바이젠더 : 남성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 개별적인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

트라이젠더 : 남성, 여성, 제 3의 성 세 가지 젠더를 가진 사람

에이젠더, 젠더리스, 뉴트로이스 :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

젠더플루이드 : 남성,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젠더를 오가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

트랜스젠더 :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사람

C. 퀘스처너

성 정체성이나 사회적 성, 성적 지향을 확립하지 못하거나 확립하고 싶지 않아 하여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으로, 해당 상태는 일시적일 수도, 영구적일 수도 있어요.

3 시스젠더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2. 혐오에 맞서야 하는 이유

퀴어 퍼레이드가 있는 날은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지만, 성 소수자를 부정하며 퍼레이드를 반대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중 일부는 “**혐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 아래 성 소수자의 존재 자체의 혐오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혐오 표현은 한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편견을 조장하고, 차별적인 괴롭힘과 증오를 선동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에 앞서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의사 표현은 개인적 개성 신장의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⁴는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 기여를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성 소수자는 하나의 정체성이나 성별, 성적 지향을 뜻하기에 이에 대한 혐오 표현은 한 개인의 특성에 대한 혐오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자유 대상이 되는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퀴어 퍼레이드가 있는 6월입니다. 무지개가 맞닿아 마침내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 더 많은 사람의 손을 통해 길게 이어지는 날을 함께 바라봐요!

퀴어 퍼레이드(Queer Parade, Pride Parade)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퀴어축제는 1970년 6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스톤월 항쟁(The Stonewall Riots) 1주년을 기념하는 퍼레이드에서 시작되었는데, 스톤월 항쟁은 1969년 미국 경찰이 게이바 '스톤월'을 습격하면서 발생한 시위를 말합니다.

이후 퀴어축제는 전 세계로 퍼져 성 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2000년에 서울 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최근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 광주, 경남 및 청주에서도 각 지역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4 네이버 지식백과, “표현의 자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95226&cid=42123&categoryId=42123>

7月

#해외여행 #인턴십



_____ 대학의 여름방학은 대학생들이 재충전을 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자기 계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부는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경험을 위해 봉사활동 또는 인턴 활동을 하고,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교환/방문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해외에서의 생활은 ‘우리나라와 다름’을 전제로 하므로 불편한 일을 겪어도 ‘혹시 문화적인 차이인가?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스킨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이렇게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면 느끼고 있던 위화감을 표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Q. 만약 외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마다 성폭력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고, 형사사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선뜻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도 술을 같이 마셨는데...’ 혹은 ‘외국이니깐 잡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며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외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영사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의료 지원이나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Tip

국내에서 개통한 휴대폰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간다면 국내에서 수신된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도착하면 현지 영사 및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문자로 수신됩니다. 이때 문자를 지우지 말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도록 합시다.

Q. 외국에서 성폭력 가해행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혹 국내 학생들이 유학 혹은 여행 도중 성폭력 가해행위자로 지목되거나 성폭력 가해행위자로 오인당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자국민이 성폭력의 가해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해외 혹은 국내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조사를 피하기보다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여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혐의가 없이 가해행위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앞서 이야기한 내용처럼 해외 영사관에 도움을 청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인신매매를 당했다거나,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했다는 등 무서운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본인이 계약한 조건이 아니거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근무를 시키는 것은 계약에 위반되는 사안입니다. 일부 사건의 경우, 브로커를 통하여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하였는데 브로커가 여권을 보관한다거나, 특정 공간에만 머물 것을 강요하며 행동을 제약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권 및 신분증을 빼앗기는 경우라면(브로커가 ‘도둑이 많으니 분실을 우려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라도),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인신매매는 성 착취와 노동력 착취로 이어지며,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해당 국가의 경찰이나 국제단체(RCY, UN), 해당 국가 내 영사관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탈리아 여행 중에 길에서 ‘벨라’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으면 여자가 아니라는데, 정말 나에 대한 칭찬인가요?

‘벨라(Bella)’는 이탈리아어로 ‘이쁘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행객이 이탈리아에서 길을 걷다가 ‘벨라’를 들었으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이탈리아 남성들의 행동에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이 원래 칭찬을 잘한다’, ‘이탈리아 남자들이 바람둥이라 그렇다’라고 말하곤 하지만 정말 길거리에서 듣는 ‘벨라’는 칭찬일까요?

이러한 표현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다양한 외국어로 ‘이쁘다’, ‘섹시하다’ 등의 단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향해 휘파람 소리를 내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 중 ‘**캐콜링(Catcalling)**’에 해당합니다. 2019년 7월에 프랑스에서는, 한 대학생이 자신에게 캐콜링을 하던 남성에게 이를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자 오히려 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의회는 8월에 ‘캐콜링 금지법’이라는 조항을 통과시켰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개인을 향해 성적인 모욕이나 협박을 할 경우 90-7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⁵ 이러한 길거리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나 경각심은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상승하면서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외모에 대한 칭찬이라고 여겨지고 넘겨졌던 발화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Q.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 ‘치크키스(Cheek-kiss)’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외국의 영화, 특히 유럽권의 영화를 보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서로 볼에 쪽쪽 뽀뽀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보통 악수를 하는데, 역시 이것 또한 문화적 차이일까요?

‘치크키스’ 또는 ‘비즈(Bise)’는 서로가 볼과 볼을 맞대고 쪽 하는 소리를 내는 행동입니다. 볼을 맞대는 수는 지역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호응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인사 방법은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하는 것이고, 입술이 볼에 닿는 진짜 ‘뽀뽀’는 정말 친한 사이에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모르는 누군가가 당신을 끌어안으며 볼에 입술이 닿도록 뽀뽀를 하면서 이진 서양 문화권의 평범한 인사법인 ‘치크키스’라고 한다면, 이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낯선 해외에서 적응하기 바쁘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당해도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지점을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연 상대방이 같은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행동을 했을지, 또는 내가 다른 성별이 어도 그런 행동을 했을지.⁶

나라마다 서로 문화가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무례한 행동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한다면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5 한국일보, “백주대로에 폭행 당한 여성 영상이 프랑스의 공분을 일으켰다”, 2018.08.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021160051885>

6 오마이뉴스, “맘대로 뽀뽀하는 외국인 남자, 그럴 땐 이렇게”, 2018.05.03, <http://omn.kr/r/37d>

8月

불법촬영



#여름애티 #여행 #자기개발 #동아리애티 #개강준비 #졸업식



1. 휴대폰 불법촬영

방학 동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오랜 시간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공공장소 등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하고 경찰(112)에 신고하고(지하철인 경우, 지하철 경찰이 따로 상주하는 경우도 있음), 향후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해행위자의 인상착의, 휴대폰 기종, 기타 주요한 특징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불법촬영 가해행위자들은 상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신고한다면 향후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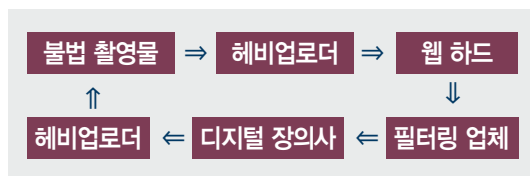
2. 성관계 불법촬영

웹하드 카르텔의 악순환

2018년 11월, 실시간 검색어를 달구었던 ‘웹하드 카르텔’과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기억하고 있나요? 이것은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로서 디지털 성폭력이 끝나지 않게 하는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불법 영상이 계속해서 남아 순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극단의 선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이처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 웹하드 카르텔이란?

‘동영상유통(헤비업로더) - 웹하드(유통) - 필터링 업체(불법 파일 차단) - 디지털 장의사(불법 파일 삭제)’가 서로 유착관계를 맺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



음란물이나 개인의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촬영된 타인의 신체 동영상상에 대해 우리 현행법상 필터링 업체가 불법 음란물

판별 기술을 통해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쉽게 불법 촬영물이 퍼지게 되고 피해자는 이것을 웹하드 업체에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빠르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개인 비용을 들여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위 업체들은 유착관계를 맺은 관계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은 돈을 받고 거래가 되어 사이트에 올려지고, 이 영상을 지우는 것도 피해자의 돈으로 이루어져 업체는 이중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죠.**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하여

카르텔이 적발된 후 경찰청에서는 특별수사단을 꾸려 디지털 산업 구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였고, 경찰 수사 결과 **한 달 반 동안 총 1,012명을 검거, 63명을 구속했습니다.** 웹하드 업체 5명을 검거하고 헤비업로더 82명을 검거해 역시 5명을 구속하였으며 불법 촬영자 445명, 불법 촬영물 유통자 420명을 각각 붙잡아 16명, 2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목할 것은 이 불법 촬영물의 수요가 ‘국산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끊이지 않고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훔쳐보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구조가 창출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악순환은 영원히 깰 수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이를 소비하는 이들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규가 담긴 불법촬영물을 보는 순간 공범이 되는 것임을 자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소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⁷

만약 디지털성범죄의 피해가 의심된다면, 피해신고를 함과 동시에 사진 및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02-817-7959



7 MBC 뉴스외전, “[이슈 완전정복] ‘여기어때’대표, 음란물 유통… ‘제2의 양진호’?”, 2018.11.29,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1400/article/4985731_30145.html

권력형
성폭력

9월
교수 | 학생
간

#2학기 #드디어개강 #가을학기

#METOO #WITHYOU



2018년 초반 미투(#METOO) 운동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였고 대학 공동체에서도 쏠아 있던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교육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5개월간 언론에 보도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폭로 중 사건이 구체적으로 공론화되고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례는 13개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13개의 사례가 갖는 공통점은 가해행위자-피해자의 관계가 교수/강사-학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폭로 당시와 가까운 일시에 발생한 피해 사실도 있었지만 오래된 사건이거나 10여 년에 걸쳐 여러 차례 행해진 피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생-학생보다 교수-학생이라는 더 강력한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만큼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고립되어 사건 대응을 고민해왔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 : 권력형 성폭력

우선 대학 내 교수-학생, 특히 대학원생은 어떤 위계 관계에 놓여있는 것일까요? 교수는 논문지도, 조교 업무 관리, 학위 수여, 석박사 진학, 장학금 수여 등 학생의 향후 진로에 있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학문적 위계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위계 관계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계열의 경우 졸업 이후에도 학생의 활동에 교수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역시 그러한 위계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교수의 부적절한 성적 언행이나 성추행 행위에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그 자리를 피하거나 밤에 걸려오는 교수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소극적 대처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권력형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교수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고발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미투 운동의 시작은, 졸업생 및 재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안전한 공동체에서 온전히 보호받으며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도록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 대학에서는 교수-학생 간의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 고발이 이어졌고, 각종 대책위원회와 지원 단체 간의 연대를 기반으로 가해행위자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고발된 많은 사건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사건 발생의 원인이 몇몇 가해행위자의 일탈적 행동이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교수가 쉽게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 학생이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게끔 폐쇄적인 환경을 조성해온 사회 구조적 원인을 짚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는 대학 공동체가 피해를 은폐하고 묵인했다는 점, 고착화된 권력 관계의 해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구성원들의 언행 역시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안전한가요? : 권력형 성폭력 근절하기

하지만 교수-학생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복돋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수-학생 간 권력형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권력을 가진 교수가 자신의 권력을 인지하고 이를 해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성찰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례로 미투운동 이후인 2019년 10월, C 대학교의 A 교수가 강의 중 “화장과 헤어로는 외국에서는 매춘부나 하는 짓”이라는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일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에 의한 성차별 발언이나 성희롱·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 간의 ‘작은 일’로 치부될 수 없으며 미투 이전부터 늘 있어왔던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과 사건 발생 전 예방과 발생 후 빠른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피해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수업 시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전보다 빠르게 공론화되어 더 많은 이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수의 발언을 지적하고, 불편함을 공감하는 등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않고 신뢰할만한 이들과 상의하는 일은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상황에서 나타난 성희롱·성폭력의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사실을 알게 되는 제3자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피해자 의심 등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않아야 하며 공론화나 전문기관에 문의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 현장을 다수가 목격하였고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 직후 웃어넘기지 않고 함께 단호히 항의하거나 냉랭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교수가 부적절한 해당 언행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반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증거 수집 및 보관의 중요성

성희롱 사건인 경우에는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황적 증거(목격자, 기록, 정황을 진술할 수 있는 제3자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여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급박적 사건이 일어나고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고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담이나 사건 심의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기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교육부 정책보고서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재학 기간 중 고충처리 상담센터 혹은 사건 처리 담당 기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혼자서 혹은 피해자들끼리만 고민해야 했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사건 발생 시 학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회 등 자치단체는 사전에 교내 전문기관 정보를 파악하여 정리하고 알리는 작업과 학생 자치단체를 통해 제보된 사건이 전문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 짓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고마비 #시월 #가을축제 #중간고사 #대나무숲 #익명커뮤니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10월 대학 익명게시판 |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서 주의할 점

신입생 A : 대학에 합격하고 나니 주변 친구들이 정보 교환이 활발한 익명 커뮤니티에 가입하라고 추천해줬어요. 그런데, 최근 익명 커뮤니티에서 타인을 향한 차별적인 글이 만연하다면서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성평등 지킴이 : 맞아요. 많은 대학생이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죠. 하지만 점점 익명이라는 가면에 숨어 차별과 혐오감을 드러내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요. 제보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대 커뮤니티에서는 ‘도서관 2열에 앉은 여자 다리 예쁘다’, ‘5층에 앉은 여자애들 섹시하다’ 등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고 희롱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고⁸, 다른 대학의 커뮤니티에서는 ‘나체 인증 사진’이라며 음란물이 잇따라 게시되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는 일도 있었어요.⁹ 또는 쪽지를 통해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내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해요.

신입생 A : 맙소사! 대체 왜 그러는 거죠? 그런 게시글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성평등 지킴이 :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은 익명이라도 대부분 작성자가 특정되므로 수사로 이어지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게시 하고, 이렇게 드러난 정보들을 종합해서 누구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¹⁰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법적 대응 및 처벌은 대개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해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신입생 A : 인터넷에 올린 글은 익명이라도 반드시 흔적이 남는군요!

성평등 지킴이 : 맞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실명이든 익명이든 범죄는 범죄이고, 설사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있는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게시글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해보며 신중하게 게시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적절하지 못한 글을 게시했을 때는 방관하거나 거들지 말고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반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게시글 작성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글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신고하는 일이 필요해요.

신입생 A : 서로 존중하는 익명 커뮤니티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선 일반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지적이 큰 도움이 되겠네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신고버튼을 누르고 댓글 기능을 통하여 다른 이용자들도 신고하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8 연합뉴스, “[인턴엑티브] 성희롱·혐오 만연한 대학 익명 커뮤니티, ‘광장 되찾자’ 목소리”, 2019.05.05,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4051500011?input=1215m>

9 중앙일보,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 ‘나체 인증사진’ 잇따라 올라와... 경찰 조사 착수”, 2019.06.21, <https://news.joins.com/article/23502795>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일부 발췌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11월

성폭력 2차 피해

#겨울시작 #초겨울 #친구들 #동기 #가족 #인권센터 #상담기관
#경찰 #성평등상담소 #양성평등센터



성폭력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변인의 바람직한 태도

성폭력 2차 피해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 주변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¹¹

— 성폭력 범죄는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아 암수범죄율이 높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숨기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주변인들이 지닌 편향된 인식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 자체보다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주변인들의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고 고통받을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2차 피해의 범위

1)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	<i>‘네가 조심했어야지.’ ‘개가 여자를 주었거나 유혹을 했겠지.’ ‘꽃뱀 아니야?’</i>
2)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i>‘왜이렇게 예민해?’ ‘피해자면 당연히 슬프고 무기력해야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당연히 거부했어야지.’</i>
3)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피해 여부를 반복적으로 의심하는 태도	<i>‘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피해자를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행위</i>
4)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보다 우선시하는 태도	<i>가해행위자의 주변인들이 적당히 화해하라고 종용하거나 가해행위자를 옹호하는 행위 피해사실을 공론화 하는 것을 공동체에 폐를 끼친 행동이라 규정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를 따돌리거나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종용하는 행위 피해 내용을 은폐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의 해결의지를 위축시키려는 행위 (예, 신고해 봤자 너만 손해야!)</i>

— 일반적으로 소매치기나 강도, 절도, 사기 등 행위에서 ‘너는 왜 지갑을 손에 들고 있었냐’, ‘너는 왜 칼을 피하지 못하고 찔렸냐’ 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 원인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성폭력 사건,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대화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대화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이 맞느냐 아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상처받았음을 먼저 생각해보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공감하고 사려 깊게 대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 연세춘추, “2차 피해? 2차 가해?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2016.05.07,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1>

준강간 / 준강제추행
합의된 성관계와
12월 연말파티와 모임
|

#기말고사 #종강 #연말모임 #연말파티 #송년회
#크리스마스 #기말고사 #학기끝

_____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종강하게 되면, 종강 총회, 크리스마스, 망년회, 연말 파티 등으로 주변이 분주해집니다. 이렇게 들뜬 분위기 속 바쁜 일상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성폭력 범죄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피해의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유발했다는 범죄 혐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연말 들뜬 분위기에서 마시는 술과 관련한 사건의 대표적인 예시인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란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 제22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대표적인 예시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놓인 상대방이 ‘좋다’ 또는 ‘싫다’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데 일방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입니다. 강간하려는 의도로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한 것이 아닐지라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과 성행위하는 것은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협박이나 폭행이 없고, 상대방이 어떠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성행위는 준강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의사 판단을 어려워하는 사람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지거나 키스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애매한가요?

그러면, 술을 마신 사람이라 성관계하거나 키스하면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그런 아닙니다. 술을 마신 사람과 하는 신체적 접촉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거나 여러 정황 증거로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성적 사고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큰 만큼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혐의점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입장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누군가와 성관계하거나 키스한다면 무조건 준강간 피해를 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다고 하여서 모든 경우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약물이나 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자유의사에 의해 흔쾌하게 동의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의 신체를 일방적으로 만지거나 성관계를 한다면 이는 성폭력, 즉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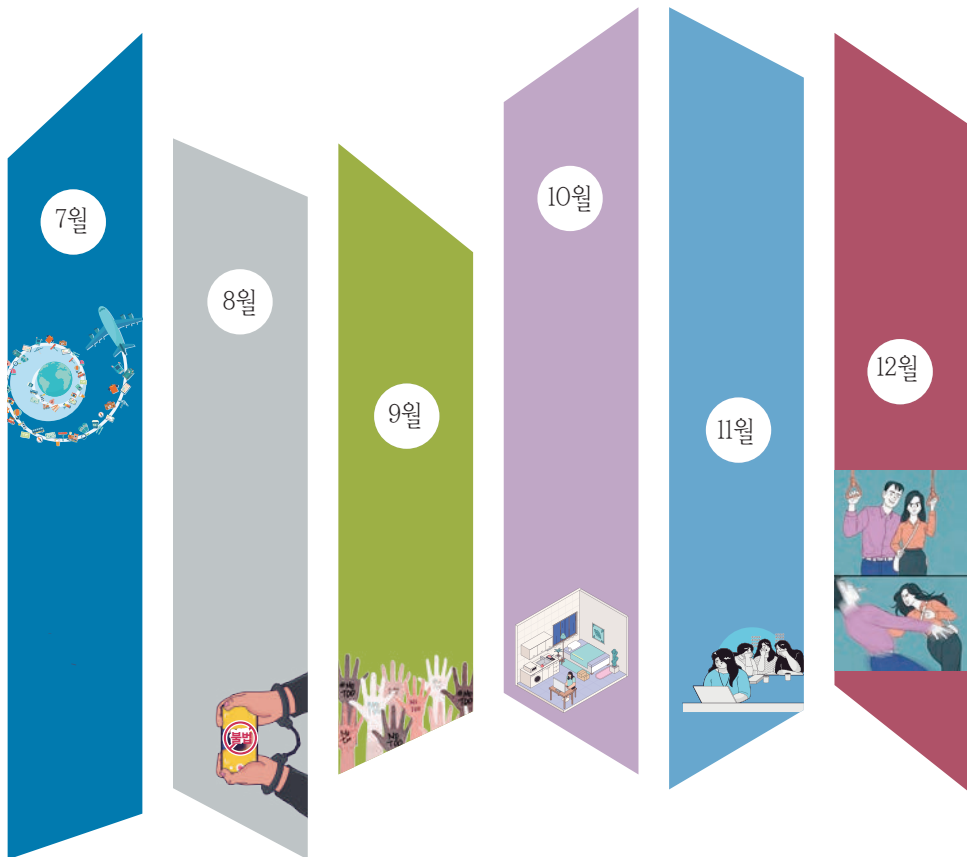
증거가 있나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경우 신체적 상해와 같은 물리적인 피해가 남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생각하여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지레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술을 마신 사람과 성관계를 하더라도 ‘어차피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고 안이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경우, 직접증거가 확보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서 정황증거인 CCTV,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이메일 수발신 내역 그리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이 주요한 증거로써 활용되기도 합니다. CCTV화면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걸음걸이, 주변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당시 음주상황과 같은 내용들은 직접 증거 이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술 먹고 있을 수도 있는 사고’ 아닌가요?

아닙니다. ‘술 먹고 한 실수’라는 해명은 가해행위자이든 피해자이든 해서는 안 되는 변명입니다. 가해행위자의 경우에는 술의 영향을 받아서, 평소라면 전혀 하지 않았을 행동이라거나 혹은 잠시 판단이 흐려져서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야기한 피해에 대하여 마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내가 거절하지 못 해서’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어떠한 이유로든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된 것은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감수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과한 음주가 일방적인 성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 행위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